



구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881호 |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222호 옥외광고물법 등의 관한 법률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회 람

| 발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 편집: 미디어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22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7.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20. ~ 2026. 8. 7.(18일간)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동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 위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벽보) 설치
-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자

처분 종류	성명	송달주소	과태료	반송사유	등기번호	위반내용
사전 통지	이*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33 *동 1**호 (십정동,약산신동아 아파트)	금160,000원	폐문부재	14417-0603 -180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7. 공시송달 내용

-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나.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가산금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8.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 불법 유동광고물 담당(032-880-4986)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